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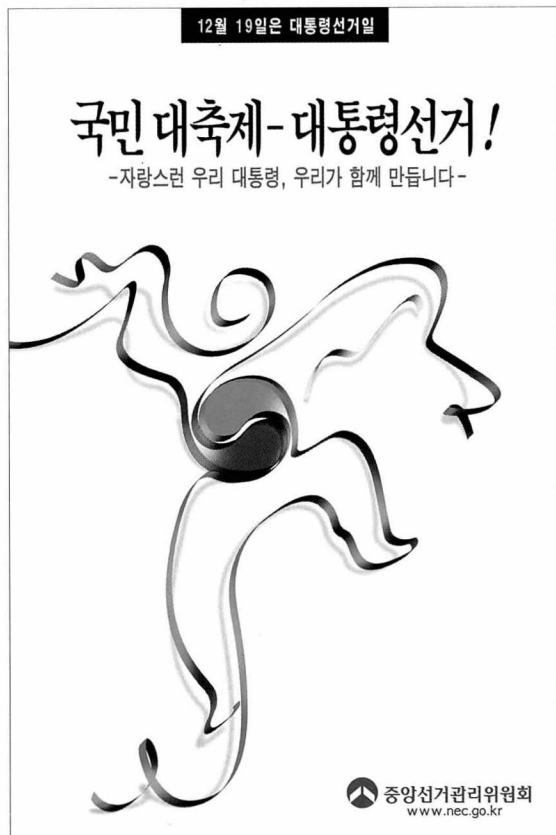
대선 '인쇄 특수없다'

후보 7명일 때 257억원 불과

이번 16대 대통령 선거인쇄물량은 어느 정도나 될까.

본보가 7명의 후보자를 가상하여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사업부에 의뢰해 조달청단가를 기준으로 합산한 결과 투표용지, 선전벽보, 선거공보, 전단형 소형인쇄물, 책자형 소형인쇄물 등 총 5종의 선거인쇄물량은 총 4억5백만매에 이르고 이를 액수로 환산하면 총 257억원이 될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2월 19일에 실시되는 제16대 대통령선거관리에 적용할 인구수 등의 법정 기준일인 9월 30일 현재 인구수는 48,212,695명, 예상선거인수는 35,117,229명으로 국민의 72.8%가 유권자이며 1997년 12월 18일 실시된 제15대 대통령선거의 인구수 46,573,648명, 선거인수 32,290,416명 보다 각각 1,639,047명(3.5%), 2,826,813명(8.8%)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상 세대자수는 16,391,092명이며 예상부재자수는 920,944명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인쇄물의 허용수량을 발표했는데 16대 대선 출마자는 후보당 3천5백4만여장의 홍보인쇄물을 제작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가 공고한 후보자별 선거홍보물의 허용수량을 보면, 선전벽보는 170,580매, 책자형 소형인쇄물은 17,881,620매, 전단형 소형인쇄물은 16,909,960매, 시각장애인용 점자인쇄물은 84,920장 등이다.

이를 기준으로 후보자가 7명일 때 투표용지, 선전벽보, 선거공보, 전단형소형인쇄물, 책자형소형인쇄물 등 총 5종의 선거인쇄물을 산정한 결과, 투표용지는 35,117,229매, 선전벽보는 1,194,060매, 선거공보는 125,171,340매, 전단형 소형인쇄물은 118,964,160매(점자인쇄물 594,440매 포함), 책자형 소형인쇄물은 125,171,340매로 5종의 선거인쇄물은 총 4억5백만매에 달하며 인쇄비용은 대략 257억원 내외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명시한 선거인쇄물량 산정 기준은 투표용지는 예상선거인수만큼 인쇄되며 선전벽보는 후보자별로 동에 있어서는 500인에 1매, 읍에 있어서는 250인에 1매, 면에 있어서는 100인에 1매의 비율로 제작되며 인구밀집상태 및 첩부장소 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1천인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다.

이밖에 선거공보와 전단형 및 책자형 소형인쇄물은 후보자별로 세대수와 부재자수를 합산한 물량만큼 인쇄된다. 선거인쇄물별 발행량과 인쇄비용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투표용지는 가로 10cm, 세로 20cm의 크기로 총 35,117,229매가 필요하며 인쇄비용은 1억4천만원

정도 들 것으로 조사됐다.

선전벽보는 평방미터 100g이내의 종이에 길이 76cm 너비 52cm로 인쇄돼 1,194,060매가 발행되며 인쇄비용은 4억원 정도다. 선거공보는 평방미터 100g이내의 종이에 길이 26cm너비 19cm로 작성돼 약 125,171,340매가 인쇄돼 인쇄비용은 19억6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전단형소형인쇄물은 용지 100g/m²이내의 종이에 길이 38cm, 너비 27cm 또는 길이 54cm, 너비 19cm로 작성돼 118,964,160매의 인쇄물이 필요하며 인쇄비용은 38억8천5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책자형소형인쇄물은 용지 100g/m²이내의 종이에 길이 27cm, 너비 19cm로 16면 이내로 인쇄돼 총 125,171,340매가 필요하며 인쇄비용은 174억9백만원이 들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번 16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1인당 선거인쇄물 비용은 33억2천7백만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함께 중앙선관위는 '국민대축제-대통령선거'란 제목의 공명선거 홍보포스터 5만장을 인쇄함에 따라 선거관련 기타인쇄물도 약 10억원 가량이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쇄업계에서는 이번 대선 인쇄물량과 지난 6.13선거 인쇄물량이 원자재가격을 포함해 총 800억원에 이르러 전체 시장의 1%를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선거특수라고 보기에는 어려운데도 국제청이 호황업종으로 분류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선거기간동안 출판경기가 오히려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정부가 DM 홍보물 발송을 자제시키는 정책으로 인해 다른 인쇄물량이 감소하는등 인쇄경기의 위축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선거인쇄물 제작요령

1. 선전벽보(법 제64조, 규칙 제29조)

(1) 작성자 : 정당(정당추천후보자) 또는 후보자(무소속)

(2) 작성방법

(가) 규격 : 길이 76cm 너비 52cm

(규격이 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법정규격을 준수하여 작성)

(나) 지질 : 100g/m²이내의 종이

(다) 색도 : 4색도이내(백색은 1색도로 보지 아니함)

(라) 작성수량 : 중앙위원회가 공고한 수량

(마) 게재사항 : 후보자 사진(후보자만의 사진을 말함) · 성명 · 기호 ·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 경력 · 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 · 정책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3) 제출방법

(가) 제출기한 : 2002. 12. 1(일) 17:00까지

제출 마감일의 17:00를 경과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마감일 24:00를 지나 제출하는 때에는 접수하지 아니함.

(나) 제출장소 : 중앙위원회가 지정 · 통지하는 구 · 시 · 군위원회

(다) 제출수량 : 중앙위원회가 공고한 수량

인쇄업자는 공고한 수량 외의 선전벽보를 인쇄하여 제공할 수 없음

⇒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소형인쇄물(법 제66조, 규칙 제31조)

(1) 작성자 및 작성방법

(가) 작성자 : 정당 또는 후보자

(나) 작성방법

○ 종류 · 규격 등

구분	종류	규격	지질
책자형	1종	길이 27cm 너비 19cm이내, 16면이내	100g/m ² 이내 사각형종이 또는 120g/m ² 이내의 사각형 재생종이
전단형(점자형 포함)	1종	길이 38cm 너비 27cm이내 또는 길이 54cm 너비 19cm이내 1매(양면게재 가능)	※점자형은 120g/m ² 이내의 사각형 종이

소형인쇄물의 앞면에는 반드시 "전단형 소형인쇄물" 또는 "책자형 소형인쇄물"이라 표시하여야 함. 법정규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송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유의하여 작성

○ 색도 : 4색도 이내(백색은 1색도로 보지 아니함)

국민대축
-자랑스런 유



대통령선거!
대통령, 우리가 함께 만듭니다.

- 작성수량 : 중앙위원회가 공고한 수량
- 게재사항
 - 작성근거, 작성하는 후보자 성명·소속정당명(무소속)과 인쇄소의 명칭·주소·전화번호
 -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소속정당명(무소속), 경력·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 (2) 제출처 및 제출시기
 - (가) 제출처 : 배부할 지역의 관할구·시·군위원회
 - (나) 제출시기
 - 책자형 : 2002. 12. 4(수) 17:00까지
 - 전단형(점자형포함) : 2002. 12. 10(화) 17:00까지
- 제출마감일의 17:00를 경과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마감일 24:00를 지나 제출하는 때에는 접수하지 않음.
- (다) 제출수량 : 중앙위원회가 공고한 수량

선전벽보 등 작성시 유의사항

- 선전벽보 등에 허위경력 등 게재시 투표구공고
 - 선관위에 제출된 선전벽보 전단형소형인쇄물 및 책자형소형인쇄물의 내용은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음.
 - 그 내용 중 경력 학력 학위 또는 상벌에 관한 게재사항이 이의제기 등에 의하여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허위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 동 공고문사본을 길이 53cm 너비 38cm로 작성하여 투표구마다 5매를 첨부하고, 선거일에는 투표소 입구에 1매를 추가 첨부
- 다른 후보자 등에 대한 비방내용 게재시 고발 및 투표구 공고
 - 선전벽보 등에 다른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하고 공고한 후
 - 위 허위경력 등 게재시에 준하여 투표구 등에도 동시에 공고함
 - 선전벽보 등의 내용상 경력등과 관련하여 이의제기가 있거나 비방내용을 이유로 한 고발이 있는 때라도 선전벽보 등은 그대로 첨부·발송함.
 - 선전벽보 등 작성시 고급지질 사용, 고액의 기획·도안료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자제
- 무소속후보자의 당원경력 표시
 - 무소속후보자는 선전벽보 등에 당원경력의 표시는 가능하나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음.